

상품 공급 및 판매대행계약서_입금가

(주)놀유니버스(이하 “판매사”라 한다)와 TK트래블(이하 “공급사”라 한다)는 상품 공급 및 대행 판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공급사”가 “판매사”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사”는 “공급사”의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 의무 및 관련 제반사항 일체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상품”이란 “공급사”가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정상적으로 운영, 판매(타 시설사 등으로부터 합법적인 영업, 운영의 판매권을 부여 받은 경우 포함)하는 이용권, 입장권, 체험권, 숙박권, 투어상품, 여행패키지 상품, 투어상품, 여행 가이드 동행 등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표(티켓, 모바일 상품권 기타 형태를 불문한다)를 말하며, 별첨 1. 에 따른다.
- ② “판매채널”이라 함은 “판매사”의 자체 플랫폼 및 상호 협의 하에 “판매사”가 지정하는 판매채널(외국인 대상 채널) 등을 의미하며, “판매사”는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개별 판매 서비스 제공 방식 및 연동 채널을 구성하기로 한다.
- ③ “고객”이라 함은 “공급사”의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 전항의 외국인 대상 판매채널에서 “상품”을 구매한 구매자를 말한다.
- ④ “판매시스템”이란, “판매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웹사이트, “상품” 종합 예약 서비스 시스템 및 “판매사” 지정 예매처를 통칭하여 의미한다.

제3조(계약 기간)

- ① 본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 30일 전 일방 당사자가 별도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 ② 만일 전항에 따라 일방 당사자가 계약 종료의 의사를 표한 경우에도 기 공급한 “상품”의 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해당 당사자는 기 판매된 “상품”의 이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상품의 공급 및 판매)

- ① “판매사”가 판매 대행하는 “상품”의 판매 일정 및 가격, “상품” 종류, 판매채널, 고객의 국적(내/외국인) 등 상세 사항은 당사자들이 별도로 서면(전자문서 포함) 협의하는 것으로 한다.

- ② “판매사”는 “판매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급사”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를 진행한다.
- ③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본 계약에 따른 “상품”을 “판매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
- ④ “공급사”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내에 “상품”의 “판매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상품”의 정보를 “판매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만일, 기한의 연장이 필요할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광고 및 홍보)

- ① “판매사”는 특정기간 “판매채널” 내에서 진행하는 “상품” 프로모션에 대하여 “공급사”와 논의할 수 있고, “공급사”는 위 프로모션 논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판매사”와 “판매채널”간 프로모션 진행에 따른 부대 비용 발생시, “판매사”와 “공급사”는 별도의 부속합의서를 통해 비용분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 ③ 본 계약에 의해 개발된 모든 광고 및 홍보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판매사”의 소유로 한다.

제6조(입금가 및 판매가격)

- ① “판매사”는 별첨 1. 에 따른 “상품”의 입금가를 “공급사”에게 지급한다.
- ② “공급사”는 전항에 따른 입금가를 책정함에 있어 위 입금가에 “판매사” 마진율을 더한 해당 “상품”의 금액이 해외 판매 채널에서 최저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상품대금 정산)

- ① “판매사”와 “공급사”는 제6조 제1항의 입금가에 “판매사”의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 고객 판매가로 정하고, 고객 판매가에서 입금가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사”의 매출로 상호 인정한다.
- ② “판매사”는 제6조 제1항에서 “공급사”가 지정한 각 “상품”별 입금가를 “공급사”에게 지급한다.
- ③ “판매사”는 매 정산대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며 정산 대상 기간인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일 기준 처리분에 해당하는 입금대금을 익월20일(이하 “정산일”이라 한다)에 입금하도록 하며, 그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판매시스템”에 등재하거나 상호 서면 합의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단, 정산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정산일로 한다.
- ④ 본 계약에 따른 견적이 통화 및 정산 통화는 원화(KRW)로 정산하되, 입금가가 기타 통화인 경우 정산금액 확정 후 매월 10일날에 해당일의 서울외국환중개거래소 최종고시환율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 금액을 확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판매대금의 지급 보류 등)

“판매사”는 “공급사”와 계약한 “상품”이 “공급사” 일부 사정으로 인한 취소, 조기종료, 공지한 내용과 다른 “상품”, 장소 변경에 대한 통보누락 등 “공급사”의 귀책사유 등으로 구매취소, 환불, 기타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클레임이 해결될 때까지 “공급사”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9조(면책 및 보장)

- ① “공급사”는 본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상호 “상품”의 유효기간 혹은 이용일 만료일까지 고객에게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사”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당시에 공지된 사용 조건 이외의 사항으로 “판매사”의 고객과 “공급사”의 일반 고객을 차별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상품”의 이용에 대해 별도의 추가적인 제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공급사”는 “상품” 및 “상품”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고객 서비스 등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 ③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공급하는 “상품” 및 “상품”과 관련된 상표, 저작권 등을 포함한 관련 권한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판매사”의 “상품” 판매 및 “공급사”의 홍보에 어떠한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에 대한 법령 위반이 없음을 보장한다. 만일 “판매사”가 제 3자로부터 “공급사”가 위와 같이 보증한 상표, 저작권 등 관련 권한이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당할 경우 “공급사”는 “공급사”의 비용으로 “판매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판매사”가 이와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판매사”의 손해배상액, 배상과 관련된 비용(이자 및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 ④ “공급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 및 “상품” 관련 서비스 등의 하자나 품질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손해는 “공급사”가 배상하여야 하고, 만일 “판매사”가 고객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급사”가 “판매사”에게 관련된 모든 손해(이자 및 변호사 보수 등의 방어 비용 등을 포함한다)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환불처리)

- ① 환불규정은 정부기관이 고시한 기준과 “판매사”의 환불 규정에 따르되, “공급사”가 “판매사”에게 “공급사”의 자체 환불규정 적용을 “판매시스템”으로 요청하는 경우 “판매사”는 공급사의 특성 및 관계법령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단, 공급사의 환불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객 클레임에 대해서 준정부기관의 시정명령 내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결정이 있는 경우 “공급사”가 그 책임을 진다.
- ② “공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품”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원활하지 않은 경우 부정확한 안내에 의해 고객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공급사”는 이로 인한 취소, 환불 및 기타 고객민원을 “공급사”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고 “공급사”는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 및 관련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공급사”가 이를 지연하는 경우 “판매사”가 선 처리(환불 내지 피해보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매사”는 해당 비용을 판매대금에서 상계 처리하고 차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③ 고객의 티켓 구매 취소에 대하여 본 조의 취소 및 환불규정에 따라 “판매사”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취소수수료는 “판매사”에 귀속한다.
- ④ “판매사”가 구매한 “상품” 중 “공급사”의 귀책사유나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판매되지 못한 “상품”이 있는 경우, “공급사”는 판매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기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반환금액 및 시기 등 세부조건은 별도 사전 서면 합의로 정한다. “판매사”의 귀책사유 없이 “상품”이 환불되는 경우, “공급사”는 판매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반환금액 및 시기 등 세부조건은 별도 사전 서면 합의로 정한다.

제11조 (비밀유지)

- ① 당사자는 법령상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 고객 개인정보 및 이를 기초로 생성된 정보로서 동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일체의 정보(이하 “기밀정보”라 한다)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정보를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상 요구되어 제공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전 통지 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당사자는 기밀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다.
- ③ 당사자는 기밀정보 제공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직원(이하 “취급자”라 한다)에게만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 또는 취급을 허용하고, 취급자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교육을 실시하며, 취급자로 하여금 그 취급 중은 물론 이후에도 기밀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 ④ 당사자는 기밀정보 제공 목적의 달성, 본 계약의 종료, 상대방 또는 고객의 요청, 기밀정보 보유기간의 만료,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 지체 없이 기밀정보를 파기·반환(종이에 출력된 경우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고, 전자적 파일로 저장된 경우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반환)하고 그 기록 및 증빙을 파기확인서와 함께 상대방에게 제출한다.
- ⑤ 일방 당사자(당사자의 임직원 및 당사자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포함)가 기밀정보를 파기·반환하지 아니하고 계속 보관·이용하거나, 이를 본 계약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상대방 또는 고객,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 당사자는 행위자와 연대하여 신속히 일체의 손해를 배상한다.
- ⑥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3년간 유효하다.

제12조 (진술 및 보증)

- ① “공급사”는 “판매사”에게 공급하는 “상품” 및 “상품”과 관련된 상표/저작권 등을 포함한 관련 권한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판매사”의 “상품” 판매 및 “공급사”의 홍보에 어떠한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 소유권 등에 대한 법령 위반이 없음을 보장한다. 만일 “판매사가 제3자로부터 “공급사”가 위와 같이 보증한 상표, 저작권 등 관련 권한이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제기를 당할 경우 “공급사”는 “공급사”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판매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판매사”가 이와 관련하여 제 3자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판매사”의 손해배상액, 배상과 관련된 비용(이자 및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을 포함한다) 등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 ② “판매사”는 “판매사”가 지정하는 사이트에 게시하는 “상품” 정보관련 웹페이지의 저작물의 저작권 일체를 취득하며, “공급사”는 “상품” 저작물의 저작권자인 경우 “판매사”에게 포괄적인 편집권을 부여하고, 본 항에 따라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은 “판매사”에 귀속한다.
- ③ “공급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상품” 및 “상품” 관련 서비스 등의 하자나 품질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손해는 “공급사”가 배상하여야 한다. “판매사”가 고객에게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급사”가 “판매사”에게 관련된 모든 손해(이자 및 변호사 보수 등의 방어 비용 등을 포함하고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를 배상하고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 ④ “판매사”는 “상품” 및 “상품”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권리 침해 주장이 제기되는 등 “상품”의 판매대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 “판매사”의 재량 하에 “상품”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 “판매사”의 이러한 행위는 본 계약의 위반행위를 구성하지 않으며 “공급사”는 이를 이유로 “판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제3자의 주장이 적법한지 여부는 무관).
- ⑤ “공급사”는 관계법령 및 “판매사”의 윤리강령 등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하게 “상품”을 주관, 제작하고 있으며, “공급사”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하고 거짓·과장 없이 진실하다는 점을 보증하며, 공공질서, 미풍양속, 기타 법령에 위배되지 않음을 보증한다.
- ⑥ “공급사”는 “판매사”가 본 계약을 통해 “공급사”의 “상품”을 판매 대행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며, 별도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사”의 판매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⑦ “공급자”가 “판매사”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경우, “판매사”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별도 합의하에 “공급자”가 요청한 위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기로 한다.
- ⑧ “공급사”는 본 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상호 “상품”의 유효기간 혹은 이용일 만료일까지 고객에게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사”는 고객이 “상품”을 구매할 당시에 공지된 사용 조건 이외의 사항으로 “판매사”의 고객과 “공급사”의 일반 고객을 차별하여 취급할 수 없으며, “상품”의 이용에 대해 별도의 추가적인 제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⑨ 만일 “공급사”가 “판매사”의 판매채널에 “상품”을 등록함에 있어 부실/혹은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발생한 고객 분쟁 등에 대하여는 “공급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어떠한 분쟁에서도 “판매사”를 면책해야 한다.
- ⑩ “공급사”는 “상품”의 이용에 있어 특히 주의할 안전정보 내지 이용을 위해 고객이 충족해야 할 조건 등 고객의 이용에 대한 별도의 제약/제한이 있는 경우 이를 구체적으로 “판매사”에게 서면으로 고지한다. “공급사”가 이를 위반하여 불이행하거나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고객 기타 제3자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공급사”는 여하한 분쟁에서 “판매사”를 면책하며, “공급사”의 비용부담과 책임으로 이를 책임지고 처리한다.

제13조(계약의 해제, 해지)

-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 후 상대방이 그 기한 내 완전한 시정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본 계약상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 2. 상대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한 경우
 - 3. 상대방에게 이용실적 등을 허위로 통보한 경우
- ②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서면 통보로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1. 본 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 전매하거나 기타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는 경우
 - 2.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포함)신청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
 - 3. 상대방에게 부도, 파산,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4. “판매사”가 “공급사”의 “상품”에 안전상, 불가항력과 유사한 상황, 기타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객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한 경우
 - 5. “판매사”가 제 3 자로부터 “상품”에 관한 권리 침해 주장이나 법적 분쟁을 제기 받는 등 티켓판매대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 6. 그밖에 “판매사”가 본 계약을 유지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 ③ 본 계약 기간 동안 내 “상품”의 판매가 부진한 경우 “판매사”는 “공급사”에 30일전 서면 고지 방식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판매 부진은 월 판매 매출의 합산금액(VAT 포함)이 5만원 이하로 누적 3회 이상 발생한 경우로 한다.
- ④ 본 조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간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⑤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여타 권리구제수단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손해배상)

- ① 만약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책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공급사”는 “상품” 및 “상품”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고객 서비스 등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 ③ “판매사”는 “공급사”와 제3자 상호간에 “상품” 및 이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만약 “상품” 티켓 판매 및 “상품” 게시 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제3자가 “판매사”에게 “공급사” 및 “상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청구 내지 클레임을 제기하는 경우 “공급사”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판매사”를 해당 분쟁에서 제외시키고, “판매사”에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④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자신 또는 피고용인, 기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 위임 등으로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대신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불가항력)

- ① 전쟁, 팬데믹, 기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위기 경보 발령 등 당사자 일방이 통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이하 “불가항력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로 인한 간접적인 손해배상 및 기타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고객의 “상품” 취소 또는 환불 요청이 발생할 경우 “판매사”는 “공급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상품” 소진(정산)처리 취소
 2. 취소/환불 대금을 “판매사”에 즉시 상환
 3. 고객이 구매한 “상품”에 대한 사용기한 변경 또는 연장
 4. 기타 “판매사”와 “공급사”간 협의한 방식
- ③ “공급사”는 전 2항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불가항력 사유를 이유로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사용을 임의로 변경, 중지, 거절할 수 없고 이 경우 “공급사”는 이에 따라 발생한 민원을 처리함은 물론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 및 비용을 “판매사” 및 고객 등 기타 제3자에 배상해야 한다.

제16조(기타 사항)

- ① 당사자들은 주소 또는 대금 지급을 위한 통장계좌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일방 당사자는 본 항에 의한 통지를 지연한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②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임, 담보제공, 양도 기타 처분을 할 수 없다.
- ③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그 내용을 변경·추가할 수 있다.

제17조(분쟁해결)

- ①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 및 조리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적 합의관할로 한다.

상기의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판매사”와 “공급사”가 기명날인 후 각 1부씩 교부한다.

2025년 10월 14일

“판매사”

(주)놀유니버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70 (금토동,
텐엑스타워)

(824-81-02515)

대표이사 배 보 찬



“공급사”

TK 트래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이문로 39,
명경빌딩 5 층

(417-70-01307)

대표이사 강일준



별첨 1.

1. “판매사”와 “공급사”는 본 계약에 따른 상품, 옵션, 입금가 등을 아래 표.와 같이 정하기로 한다.

No	상품명	옵션	입금가	비고
1	SBS 인기가요(매주일요일)	투어	225,000	7 일전 예약
2	MBC 쇼챔피언(매주수요일)	티켓	140,000	5 일전 예약
3	SBS 더쇼(매주화요일)	티켓	140,000	7 일전 예약
4	ENA 케이팝차트쇼(10/22, 11/19)	티켓	180,000	5 일전 예약

2. 별첨 표. 기재 상품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 변경합의서를 별도 체결하거나 상호 서면(이메일 포함) 합의를 거쳐야 한다.
3. 상호 서면(이메일 포함) 합의를 통해 별첨 표. 기재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을 원하는 계약 당사자는 30 일 전까지 변경 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